

제 1384 호
1987.11.30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일반행정
편집인: 공보관 김성
전화: 731-6173~3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전화: 733-2357

시 보

차 례

- ◎ 조 칙
 - 제 2219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
증개정조례 3
 - 제 2220 호: 서울특별시공사부설설치조례개정조례 3
 - 제 2221 호: 서울특별시소방설치조례개정조례 3
 - 제 2222 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 5
- ◎ 규 칙
 - 제 2199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 5
- ◎ 교 시
 - 제 82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제약승인 14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851 호 : 도시 공원시설사용료결정	14
◎ 구 고 시	
성동구제 7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5
◎ 공 고	
제 694 호 : 도시계획안	15
제 695 호 : 도시계획용도지구 (종척지구) 변경안공람	16
제 696 호 : 도시계획안	17
제 700 호 : 도시계획안	18
제 70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20
제 716 호 : 제 2 종건거공사면허취소처분	21
제 718 호 : 열사용기자재제조업허가취소처분	21
제 722 호 : 비료생산업종목추가허가	21
제 72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23
제 732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	24
제 734 호 : 제 2 종건거공사면허취소처분	24
◎ 구 공 고	
강동구제 101 호 : 원인사용승인	25
◎ 예 규	
제 495 호 :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중개정규정	25
◎ 사 령	

조 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훈장, 구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87. 11. 30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219 호

서울특별시훈장, 구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훈장, 구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1-3) 소방본부 지방공무원정
원표 소방직관 다음에 별정직 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정 원	정 원 내 용
별정직	1	7급상당1 (영양사)

고용직 정원 "14"를 "11"로 하고
정원내용중 "건공 2"를 "전기보조
원 2"로, 교직원 "6"을 "1"로
"청부 2"를 "감무원 4"로 하여
합계 정원 "90"을 "88"로 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220 호

서울특별시동사무소장직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장직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직렬표 9급
정원 "3305"을 "3442"로 하고, 정
원내용중 행정직 "3225"을 "2363"
으로 하며, 9급정원 "3990"을
"4208"로 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3662"를 "3869"로, 특목직 정원
"312"을 "325"으로 하고, 교육직정
원 "906"을 "910"으로 하고, 정원
내용중 사환 "455"을 "457"로 하
며, 합계 정원 "9725"을 "10,08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221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 4조 제 3항 "제 2호 내지 제 8호"를 "제 3호 내지 제 9호"로 하고 동항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19구급대 및 119구조대 운영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 및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분	정원	정원 내 용
소방직	2,749	소방정 13, 소방령 28, 소방경 67, 소방위 88, 소방장 273, 소방교 612, 소방사 1,668
고용직	146	타자원 18, 행정보조원 12, 기계보조원 19, 잡무원 27, 사원 70
합계	2,895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칭	관할 구역	
종로소방서	중구, 종로구 및 서대문구 일부	
중부 "	중구, 종로구 및 동대문구 일부	
성동 "	성동구 일원	
용산 "	용산구 일원	
동대문 "	동대문구 일부	
영등포 "	영등포구 일원 및 구로구 일부	
북부 "	성북구 및 도봉구 일원	
서부 "	은평구 및 도봉구 일원	
강남 "	강남구 일원	
남부 "	관악구, 동작구 일원 및 강남구 일부	
강서 "	강서구 일원 및 구로구 일부	
강동 "	강동구 일원	
마포 "	마포구 일원	

◎서울특별시조례제 2222 호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소방직란 다음에 별정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별정직	1 7급상당 1 (영양사)

고용직정원 "8"을 "9"로 하고 정원내용중 "정부 1"을 삭제하며 "기제공 1"을 "기제보조원 1"로 "감무원 (취사) 2"를 "감무원 4"로, "수위 2"를 "방호원 2"로 하고 "합계정원 "37"을 "39"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 규칙중 한다.

소방관파견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종로소방서	새문로소방파출소	종로수문동 146-2	종로구중: 중학동, 수송동, 견지동, 관문동, 청진동, 공평동, 종로 1가, 서림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11. 30

서울특별시장 엄 보 현(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99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다목 내지 사하"을 "다목 내지 마포"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119구급대 및 119구조대운영 (별표) 소방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을 발표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구중 : 북창동, 소공동, 태평로 2가, 남대문로 1, 2, 3, 4 5가, 서소문동, 전동, 순화동, 의주로 1, 2가, 중원동 만리동 1, 2가, 봉래동 1, 2가, 회현동 1, 2, 3가, 남창 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 1가, 을지로 1, 2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효동, 명동 1, 2가, 적동 1가, 남산 동 1, 2, 3가, 충정로 1가
신 교 소방관 파출소	종로구 신교동 70-2		종로구중 : 구기동, 명창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청 운동, 신교동, 효자동, 궁정동, 창성동, 봉인동, 누상 동, 누하동, 옥인동, 무악동, 채부동, 실운동, 내자동 사직동, 봉의동, 적선동, 고남동, 평동, 송원동, 후파 동, 교북동, 행촌동, 도림동,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 1, 2가, 세종로동
종 로 소방관 파출소	종로구 묘동 59-5		종로구중 : 팔관동, 삼청동, 단국동, 소격동, 학동, 사간 동, 송현동, 가회동, 은니동, 경운동, 익선동, 낙원동 인사동, 종로 2가, 판철동, 훈정동, 봉익동, 묘동, 돈 의동, 종로 3가, 관수동, 강사동, 의릉동
서대문 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 미군동 165		서대문구중 : 현저동, 병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충정로 2, 3가, 합동, 미군동, 북아현동
연 건 소방관 파출소	종로구 연건동 34-1		종로구중 : 비화동, 명륜동 1, 2, 3, 4가, 연건동, 동승동 월남동, 인의동, 예지동, 연지동, 효재동, 종로 4가 종로 5가중 80, 85, 88, 89, 91, 93-95, 97-98, 100, 102-104, 110, 113, 115, 117, 119-122, 124, 138, 395-396번지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중 부 소방서	무학소방관 파출소	중구 무학동 43-7	종로구중 창신동, 승인동 중구중 황학동, 홍인동, 무악동, 신강동, 장충동 1, 2가
	율저로소 방관	중구 율지로 7가	중구중 주교동, 방신동, 율지로 5, 6, 7가, 고잔동, 여관동, 충무로 5가, 평회동 1, 2가, 쌍림동, 목정동 종로구중 이화동, 창신동, 종로 6가, 종로 5가, 종로 5가중 80, 85, 88, 3), 91, 93-95, 97-98, 100, 102-104 110, 113, 115, 117, 119-122, 124, 138, 395-396 번지 제외)
	용두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용두동 112-4	동대문구중 신설동, 용두동(용두재 2동), 계가동(계가재 2동)
	충무로소 방관파출소	중구 충무로 3가 40-6	중구중 임정동, 신림동, 율지로 3, 4가, 지동 2가, 초동, 인현동 1, 2가, 충무로 3, 4가, 필동 1, 2, 3가, 남학동, 주자동, 여장동
성 동 소방서	구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구의동 253-23	성동구중 구의동, 팔각동, 자양동, 보림동
	성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송정동 81-8	성동구중 성수동 1, 2가, 화양동, 송정동
	능동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능동 316-3	성동구중 능동, 군자동, 중곡동
	행당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도선동 35	성동구중 하왕십리동, 상왕십리동, 아장동, 홍익동, 도선동, 행당동, 사근동, 용답동
	금호소방 관 파출 소	성동구 금호동 1가 179-3	성동구중 응봉동, 옥수동, 금호동 1, 2, 3, 4가

서명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용산소방서	한강로소방관파출소	용산구 한강로 2-89	용산구중 선계동, 청과동 1, 2, 3 가, 갈월동, 효창동, 남영동, 원효로 1, 2 가, 한강로 1, 2 가, 신계동, 문배동, 용산동 3, 4, 5, 6 가, 서빙고동
	이태원소방관파출소	용산구 이태원동 126-13	용산구중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동빙고동, 주성동
	후암소방관파출소	용산구 후암동 244-54	용산구중 동자동, 후암동, 용산동 1, 2 가
	이촌소방관파출소	용산구 이촌동 212-3	용산구중 도원동, 용문동, 철암동, 산청동, 신왕동, 원효로 3, 4 가, 한강로 3 가, 이촌동
동대문소방서	장안소방관파출소	동대문구장안동 434	동대문구중 장안동, 답십리동, 휘경동(휘경제 2 동) 전농동(전농제 1 동, 전농제 3 동, 전농제 4 동)
	청량리소방관파출소	동대문구청량리동 2-4	동대문구중 청량리동, 외기동, 휘경동(휘경제 1 동), 어운동, 계기동(계기제 1 동), 용두동(용두제 1 동), 전농동(전농제 2 동)
	중화소방관파출소	동대문구중화동 303-7	동대문구중 상봉동, 중화동, 묵동
	면목소방관파출소	동대문구면목동 727	동대문구중 면목동
	망우소방관파출소	동대문구망우동 364-20	동대문구중 망우동, 신내동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관파출소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 100	영등포구중 영등포동, 영등포동 1, 2, 3, 4, 5, 6, 7, 8 가, 문배동 1, 2, 3, 4, 5, 6 가, 도림동, 신길동(신길제 1 동, 신길제 2 동, 신길제 3 동, 신길제 4 동, 신길제 7 동)

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등포 소방서	구로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구로1동 409-60	구로구 중 신도림동, 구로동(구로3동1123-1호부터 113-9호, 170-3호부터 766-4호 제외)
	시흥소방관 파출소	구로구 독산동 1030	구로구 중 독산동, 시흥동, 구로동(구로3동1123-1호부터 1133-9호)
	여의도소방 관리소	영등포구 여의 도동 48-2	영등포구 중 여의도동
	당산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9	영등포구 중 당산동1,2,3,4,5,5가, 양정동1,2,3,4,5,6가, 양화동, 독산동
	공단소방관 출장소	구로구 구로동 183	구로구 중 가리봉동, 구로동(구로3동170-3호부터 766-4호)
	대림소방관 파출소	영등포구 대림동 906-133	영등포구 중 신길동(신길제5동,신길제6동), 대림동
	북 부 소방서	중앙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중앙동 3-72
돈암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삼선동 4가 349-1	성북구 중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2,3,4,5,6,7가, 삼선동1,2,3,4,5가, 보문동1,2,3,4,5,6,7가, 돈암동(둔암제2동)
정릉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길음동 1078-2	성북구 중 정릉동, 길음동
창동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방학동 653-4	도봉구 중 창동, 방학동, 도봉동, 쌍문동(쌍문제2동)
미아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미아동 327-2	도봉구 중 미아동, 수유동(수유제1동)
상계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상계동 197-9	도봉구 중 상계동, 중계동

서 별	명 칭	위 차	관 할 구 역
북 부 소방서	장위소방관 파출소	성북구 장위동 34	성북구중 장위동, 석관동 도봉구중 칠계동, 연동(별계 2동)
	우이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수유동 605-347	우이동, 수유동(수유제 2동, 수유제 3동, 수유제 4동, 수유제 5동), 쌍문동(쌍문제 1동, 쌍문제 3동), 번동(별계 1동)
	공능소방관 파출소	도봉구 공능동 656-4	도봉구중 공능동, 화계동
서 부 소방서	은평소방관 파출소	은평구 녹번동 48-5	서대문구중 홍은동, 용계동 은평구중 불광동(불광제 1동), 녹번동, 응암동, 역촌동, 구삼동, 대조동
	연희소방관 파출소	서대문구연희동 81-10	서대문구중 봉원동, 신촌동, 대신동, 대현동, 창천동, 연희동
	북가리소 방관파출소	서대문구 북가 리동 333-9	서대문구중 북가리동, 남가리동 은평구중 신사동, 중산동, 수색동
	갈현소방관 파출소	은평구 갈현동 3-4	은평구중 진관대동, 진관외동, 구과말동, 갈현동, 불광동(불광제 2동, 불광제 3동)
강 남 소방서	삼성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삼성동 171-3	강남구중 삼성동, 대치동, 길원동, 자모동, 자곡동, 수서동, 율천동, 세곡동

서 일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영등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논현동 92-1	강남구 중 압구정동, 칠암동, 신사동, 장원동, 논현동 (145-152, 154-156, 159, 896-899, 915-932, 956-970, 971-975, 1007-1013 번지) 학동 (900-911, 933-936, 938, 940-945, 950-955, 977-985, 988-991, 993-1007 번지)
	서초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서초동 478-1	강남구 중 서초동, 반포동 (반포제 1 동, 반포제 2 동)
	역삼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역삼동 771-2	강남구 중 역삼동, 도곡동, 논현동 (95-99, 101-102, 114-136, 138-144, 484-498, 1015-1016, 1039-1056, 1058-1059 번지), 학동 (499-519, 1017-1025, 1027-1029, 1031-1038, 1060-1087, 1089-1091 번지)
	양재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개포구 회 정리지구 225-1	강남구 중 양재동, 포이동, 우면동, 범곡동, 권지동, 신원동, 내곡동
남 부 소방서	반포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한포동 190-2	강남구 중 방배동 (방배본동, 방배제 1 동), 반포동 (반 포본동, 반포제 2 동) 동작구 중 동작동
	노량진소방 관파출소	동작구 노량진 1 동 153-18	동작구 중 흑석동, 노량진동, 본동, 상도동 (상도제 1 동)
	사당소방관 파출소	강남구 방배동 733-1	동작구 중 사당동 강남구 중 방배동 (방배제 3 동) 관악구 중 남원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신림소방관 파출소	관악구신림 5동 1444-21	관악구중 신림동 (신림본동, 신림제 1동, 신림제 3동, 신림제 4동, 신림제 5동, 신림제 6동, 신림제 7동, 신림제 8동, 신림제 10동, 신림제 11동), 봉천동 (봉천본동, 봉천제 1동)
봉천소방관 파출소	관악구봉천 4동 38-1	관악구중 봉천동 (봉천제 2동, 봉천제 3동, 봉천제 4동, 봉천 제 5동, 봉천제 6동, 봉천제 7동, 봉천제 8동, 봉천제 9동, 봉천제 10동), 신림동 (신림제 2동, 신림제 9동)
상도소방관 파출소	동작구 상도동 324-21	동작구중 상도동 (상도제 2동, 상도제 3동, 상도제 4동, 대방동, 신대방동)
강 서 소 방 서	등촌소방관 파출소	강서구중 열차동, 가양동,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개화동
	화곡소방관 파출소	강서구중 화곡동, 신월동 (신월제 1동, 신월제 3동, 신월제 5동)
	공합소방관 파출소	강서구중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합동, 파해동, 오곡동, 오쇠동
	오류소방관 파출소	구로구중 고척동, 개봉동, 궁동, 오류동, 은수동, 천왕동, 향동
	신정소방관 파출소	강서구중 신선동 (신정제 3동, 산정제 4동, 신정제 5동) 신월동 (신월제 2동, 신월제 4동, 신월제 6동)
	목동소방관 출장소	강서구중 목동, 신정동 (신정제 1동, 신정제 2동)
강 동 소 방 서	성내소방관 파출소	강동구중 성내동, 둔촌동, 이동, 길동, 성내 1동 (99-3, 108-1, 321, 320-13, 15, 7, 9, 319-33, 327, 328번지 제외)

서명	명칭	위치	관할구역
	잠실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잠실동 44-5	강동구중 잠실동(잠실제 2동), 삼천동, 석촌동, 송파 동, 잠이동, 가락동
	천호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성내동 302-13	강동구중 풍납동, 천호동, 암사동, 성내 1동(99-3, 108-1, 321, 320-13. 7, 9, 15, 319-33, 327, 328 번지)
	거여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마천동 307-11	강동구중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광저동, 오금동
	고덕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고덕동 494	강동구중 상일동, 하일동, 고덕동, 명일동
	종합운동장 소방관 파출소	강동구 잠실동 10	강동구중 잠실동(잠실제 1동, 잠실제 2동, 잠실제 5동) 신천동(잠실제 4동, 잠실제 6동)
마포 소방서	대흥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신수동 100	마포구중 대흥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천석동, 창전동, 상수동, 하수동, 하중동, 신성동
	도화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도화동 180-6	마포구중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열리동
	서교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서교동 394-12	마포구중 동교동, 서교동, 연남동, 학경동, 당인동, 강원동(강원제 1동)
	성산소방관 파출소	마포구 성산동 64-13	마포구중 망원동(망원제 2동), 석산동, 중동, 상암동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2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신택은행직원주택조합
의 1개 조합
조합장 : 김병하의 504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영등포구 당산동4가 88,89번지

나. 대지면적 : 18,570.9㎡

다. 건축면적 : 3,790.71㎡

라. 건축연면적 : 50,342.16㎡

마. 규 모 : 아파트 15층 6동 509세대
상가 3층 1동
유치원 2층 1동

바. 사업시행기간 : 1987.11-1989.4.30

◎서울특별시고시제 851 호

도시공원시설사용료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 6조 별표 2의 규정에의거 도시공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한다.

1987.11.30

서울특별시장

종 별	공원별	시설명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유희시설	월곡제1 근린공원	밤바보트	어른 1회	600원	
			청소년 1회	400원	
			어린이 1회	300원	
기타시설	"	유령의집 밀납관	어른 1회	600원	
			청소년 1회	500원	
			어린이 1회	400원	
운동시설	보라매 공원 (서직영 공통)	탁구장	단식 어른 30분까지	700원	기준시간 경과시 매 30분마다 600원씩가산 " " " 400 "
			" 청소년) "	500원	
			" 어린이) "		

고 시

◎성동구고시제 7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65 호('87.8.5)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원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도시정비과(전화 415-87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11. 30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성동구사군동 110 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한양국민학교 교사중축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성동구법당동 17 번지

성명: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김 연 순

라. 사업의 규모

학교부지: 527,436㎡

대 지: 211,485㎡

기존연면적: 4,070,41㎡

변경연면적: 4,896,75㎡

(합 826,34㎡)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최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예정일: '88.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칭: 한양학원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한양학원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694 호

도시 계획 안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시령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기 바랍.

가. 공람기간

1987. 11. 30 - 1987. 12. 13

(14 일간)

1987. 11. 30

서울특별시청

○ 도시계획안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면 적 (㎡)		공립장소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도시계획 시 설	공원변경 (관수어린이공원)	종로구과수동 98-1 일대	1,322	0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제 지
"	공원변경 (용인어린이공원)	종로구통인동 1-5 일대	3,240	0	"	"
"	공원변경 (영유어린이공원)	종로구명륜동 23-9 일대	1,350	1,194	"	감) 156
도시계획 (용도지구)	용치지구변경 (성북지구)	계	2,069,064	1,797,064	"	감) 262,000 (성북구관내 : 243,000)
"		종로구와룡동 1번지일대			"	감) 16,720
"		종로구혜화동 5-99 일대			"	감) 2,280
"	용치지구변경 (연평지구)	종로구필운동 57-1 일대	839,750	839,174	"	감) 576
"	용치지구정정 (연평지구)	계	1,899,330	1,952,034	"	증) 52,704
"		종로구명창동 562-1 일대			"	증) 41,720
"		종로구명창동 175-4 일대			"	증) 3,384
"		종로구명창동 446-2 일대			"	증) 7,600
<p>◎서울특별시공고제 695 호</p> <p>도시계획용도지구 (용치지구) 변경안 공람</p>			<p>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을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통</p>			
<p>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p>						

탐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가.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87.11.30-'87.12.13 (14일간) 1987.11.30		
3. 도시계획 용도지구 (총치지구) 변경안				
지구명	위 치	변경전(㎡)	변경후(㎡)	차 고
오류지구	계	2,330,000	2,218,557	감 111,456 ㎡
	구로구오류동 4-1 및 강동 208 일대			95,000 ㎡
	구로구운수동 20 일대			6,200 ㎡
	구로구운수동 83 일대			10,250 ㎡
시흥지구	계	863,500	793,580	감 69,920 ㎡
	구로구시흥동 984-29 일대			9,490 ㎡
	구로구시흥동 940 일대			37,100 ㎡
	구로구시흥동 436-58 일대			10,630 ㎡
	구로구시흥동 942-8 일대			13,300 ㎡

1987.11.30
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696 호
 도 시 계 획 안

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안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관련도서를 보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1987.11.30
시 울 특 별 시 장

도 시 계 획 안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면 적		고
			변경전	변경후	
도시계획	총치지구	성북지구	2,059,064 ㎡	1,787,064 ㎡	감 272,000 ㎡
용도지구	변경결정 (일부해제)	종로구와룡동 1번지일대			16,720 ㎡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면 적		비 · 요
			변 경 전	변 경 후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원부해제)	종로구회파동 5-99 일대 성북구성북동 119-9 일대 성북구성북동 145-55 일대 성북구성북동 168 일대 성북구성북동 186 일대 성북구돈암동 45-154 일대	종로구회파동 5-99 일대			2,280㎡
		성북구성북동 119-9 일대			장 70,000㎡
		성북구성북동 145-55 일대			55,420㎡
		성북구성북동 168 일대			41,200㎡
		성북구성북동 186 일대			3,880㎡
		성북구돈암동 45-154 일대			72,500㎡
		안암지구	1,026,200㎡	856,340㎡	감 169,860㎡
안암동 57 일대 성북구안암동 5가 12 일대 성북구안암동 5가 152-191 일대 성북구안암동 2가 161 일대 성북구안암동 3가 137 일대	안암동 57 일대			84,100㎡	
	성북구안암동 5가 12 일대			54,700㎡	
	성북구안암동 5가 152-191 일대			13,130㎡	
	성북구안암동 2가 161 일대			3,354㎡	
	성북구안암동 3가 137 일대			14,576㎡	
	수유지구	1,727,000㎡	1,420,800㎡	감 306,200㎡	
성북구정릉동 236,249 킷 도봉구미아동 108-40 일대 도봉구수유동 567-20 일대	성북구정릉동 236,249 킷			212,600㎡	
	도봉구미아동 108-40 일대				
	도봉구수유동 567-20 일대			93,600㎡	

◎서울특별시공고 제 700 호

도 시 계 획 안

1. 도시계획법 제 1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거일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87. 11. 30 ~ 1987. 12. 13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50-1385, 1386, 1387)

1987. 11. 30
서울특별시장

구분	도시 계획안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현경전	변경후	증 감		
변경	봉치지구	금호	계	945,710	475,075	감 470,635	재정비	
		옥수지구	중구신당동 40 일대				감 68,180	
			중구신당동 309-127 일대			감 92,000		
			중구신당동 432-9 일대			감 82,525		
			중구신당동 372-2934 일대			감 42,690		
			성동구금호 1 가 820 일대			감 95,020		
		성동구금호 4 가 758 일대			감 90,220			
		광각지구	계	346,450	331,000	감 15,450	재정비	
			성동구광장동 393 일대			감 11,070		
			성동구광장동 388 일대			감 4,380		
		행당지구	계	268,500	244,800	감 23,700	재정비	
			성동구마장동 382-25 일대			감 3,200		
성동구사근동 301-20 일대				감 20,500				
농동지구	계	326,500	136,150	감 190,350	재정비			
	신동구농동 397-1 일대			감 42,900				
	성동구군자동 27-8 일대			감 74,310				
	성동구송정동 38-1 일대			감 73,140				
변경	운통장	자양지구	성동구구의동 214 일대	186,500	158,700	감 27,800	재정비	
		성동구광장동 188-2	3,595	-	감 3,595	(폐지)		

구분	시설명	등급	유별	폭(m)	연장(m)	위 치	참 고	비 고
변경	도로	소로	2	8	300	성동구옥수동 220 의 2 일대	폐지	재정비
		"	3	6	810	성동구사근동 301 의 84 일대	폐지	"
		"	3	6	205	성동구마장동 342 의 13 일대	폐지	"
		"	3	5	150	성동구행당동 294 의 73 일대	폐지	"
		"	3	4	160	성동구금호 4 가 1004 의 1 일대	폐지	"
		"	3	6	17	성동구성수 1 가 656 의 509 일대	취차변경	"
		"	3	10	110	성동구광장동 79-1 일대	묵원화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 70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한다.
2. 토지(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다, 미

- 공람용지 -

가. 사업개요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 공고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람.

1987. 11. 30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구 도	착공	준 공	결정고시 일자	지적고시 일자
상제동(산 42-1) 사회 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사업(도로) 상제동(산 42-1)사회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	B=6~7m L=130m	'87. 11.20	'87. 12.31	서울고시 제 185 호 '73.12.3	서울고시 제 185 호 '73.12.3

<p>◎서울특별시공고 제 716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취소</p> <p>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p>	<p>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 11. 3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아 래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취 소 사 유
제 776 호	신화전기공사	영등포구영등포동2가184	최형석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면허기준) 미달

<p>◎서울특별시공고 제 718 호</p> <p>영상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 취소처분</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 조의 규</p>	<p>정에 의거 영상용 기자재 제조업 허가말 취소 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 11. 3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허가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허가취소일자	취소사유
28	동아금속개발주	성수2가272-5	민정석	'87. 11. 21	행방불명

<p>◎서울특별시공고 제 722 호</p> <p>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p> <p>비료관리법 제 11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5 항과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7 조제</p>	<p>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7. 11. 3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허가번호: 제 1-2 호 2. 허가년월일: 1987. 11. 26 3. 성 명: 손 명 희</p>
---	---

<p>4. 주소 : 서울강남구반포동 1245 번지 반포아파트 95-107</p> <p>5. 사업장소재지 : 서울 강서구 가양동 92 번지</p> <p>6. 상호 : 제일제당㈜</p>	<p>7. 비료의 종류 및 품목 : 별첨과 같음</p> <p>8. 보증성분 및 기타의 규격 : 별첨 과 같음</p> <p>9. 생산능력 : 별첨과 같음</p>
---	--

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내역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증 성 분 량		기 타 의 규 격 (%)	생 산 능 력 (년간 톤)	허 가 년월일
	유 효 성 분 량 (%)	유 태 성 분 량 (%)			
제 2 종 복합 비료 13-11-12 (수출용)	질소전량 : 13 가용성인산 : 11 가용성가리 : 12 구용성고토 : 2 수용성붕소 : 0.3	1. 질소, 인산, 가리, 각 각의 최대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 황청산화물 : 0.025 · 비 소 : 0.005 · 아 질 산 : 0.02 · 뷰렛테질소 : 0.01 · 실 지 민 산 : 0.005 2. 가용성 인산함유율 1%에 대하여 · 카드뮴 : 0.00018	유리황산 0.5%이하	45,000	'87.11.25
제 2 종 복합 비료 12-11-10 (수출용)	질소전량 : 12 가용성인산 : 11 수용성가리 : 10 구용성고토 : 1 수용성붕소 : 0.3	위 외 같음	위 외 같음	45,000	.
제 2 종 복합 비료 10-12-10 (수출용)	질소전량 : 10 가용성인산 : 12 수용성가리 : 10 구용성고토 : 2 수용성붕소 : 0.3	위 외 같음	위 외 같음	45,000	.

비료생산업품목추가가례가내역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보 품 성 분 량		기타의 구성(%)	생산능력(연간톤)	허가년월
	유효성분량(%)	유 의 성 분 량 (%)			
제2중복합비료 9-14-12 (수출용)	질소전량: 9 가용성인산: 14 수용성가리: 12 구용성고토: 1 수용성붕소: 0.3	1.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최대추진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에 대하여 · 황청산화물: 0.025 · 비 소: 0.005 · 아 질 산: 0.02 · 뷰렛대질소: 0.01 · 질 과 인 산: 0.005 2. 가용성 인산함유율 1%에 대하여 · 카드늄: 0.00018	유리황산 0.5% 이하	45,000	87.11.26
제2중복합비료 9-12-8 (수출용)	질소전량: 9 가용성인산: 12 수용성가리: 8 구용성고토: 2 수용성붕소: 0.3	위 와 같 음	위와같은	45,000	·
제2중복합비료 15-12-8 (수출용)	질소전량: 15 가용성인산: 12 수용성가리: 8	위 과 같 음	위와같은	45,000	·

<p>◎서울특별시공고제 728 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p> <p>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삼선동 아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약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p>	<p>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상소에서 14일간 공람 공고한다.</p> <p>다 음</p> <p>가. 공람기간: 87.11.30-87.12.13</p> <p>나. 공람장소: 성북구청 도시경비과</p> <p style="text-align: right;">1987.11.3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청</p>
---	---

구 공 고

◎강동구공고제 101 호

관 인 사 용 승 인

강동구 성내 2 동장 (민원사무전용)
관인 및 제인을 아래와 같이 폐기 및
개작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관인 규칙
(제기인)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1. 관인명 : 강동구 성내 2 동장 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2. 사용개시일 : 1987. 11. 27.
3. 폐기처분일 : 1987. 11. 26.
4. 관인의 인명 (폐기 및 개작인) :
아 래

1987. 11. 30.
강 동 구 청 장

(개 작 인)

관
인



공인명 강동구성내 2 동장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95 호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
속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
속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7. 11. 30

서 울 특 별 시 장

제 2 조 (용어의 정의) 중 제 1 호 및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하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이라함은 1981. 12. 31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일) 이후 취득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정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1982년 제 1 차 항공사진 촬영일 이후로 한다.

5. 부수시설이라 함은 건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폭 1m 이하의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개, 대문과 가정용 볼탱크, 장독대(높이 2.1m 미만 면적 10㎡이하로서 하부용도는 변소, 창고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연탄판(기존주택에 부수된 면적 10㎡이하), 굴뚝(가정용), 옥상 및 지하실 출입구 차면용시설, 차량보호시설(주택에 부수된 벽면이 없는 높이 2.1m 미만), 기계보호시설(공장내 노천에 기어 설치된 기계의 보호를 위한 시설로서 벽면이 없는 높이 2.1m 미만), 휴게 및 대기시설(공장, 사무실, 학교등 대형건물의 부속시설로 지상에 설치된 벽면이 없는 면적 30㎡이하), 경비용 망루, 우물덮개 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한다.

제 10 조 (단속업무 관계공무원의 신상 필벌)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속업무종사공무원의 처벌기준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 (단속업무 확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매년 2회(상·하반기별) 소속 동사무소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을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7. 12. 1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되어 처리중이거나 처리할 사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2.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관계공무원의 문책기준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규정의 "별표 4" 문책기준표를 적용한다.

사 령

1987년 11월 21일자 명제 358 호

성 명	발령사항	전 부 서	직 급
노명철	김급구명안내센터	의약과	지방행정주사
송유일	"	남이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 1987년 11월 23일자			명계 359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권재숙	강동구 파견('87.11.23- '88.1.22)	용산구	지방행정직 8급상당
◎ 1987년 11월 25일자			명계 360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을순	강동구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정은숙	강남구	"	"
안찬영	도봉구	성북구	"
김진순	마포구	용산구	지방파자원
김미석	한강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장무원
문태성	구로구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박세천	강남구	용산구	"
나선로	성북구	성동구	"
차만술	강동구	도봉구	"
임석진	강서구	"	지방행정주사보
유종범	관악구	은평구	"
김용복	도봉구	동작구	지방행정서기보
송병정	"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보
이장영	성동구	강남구	지방행정서기
정근모	강동구	죽도수원지사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이범화	구로구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박제순	성동구	도봉구	지방전속기사보
이철중	차량정비사업소	암사수원지사사무소	지방직 9등급 (지방기계원)
이인선	성북구보건소	서대문구	지방보건기원
김홍민	용산구(조사원요원)	동촌기도소	지방행정보조원
◎ 1987년 11월 21일자			명계 361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순길	대천시 건물유명합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1987년 11월 24일자		명제 362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정우	유취성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관공촌리 사업소	시장회공기차
◎ 1987년 11월 27일자		명제 36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석현	강동구	중랑하유청리장	지방기계원시보 (8등급)
박봉기	환경관리사업소	강동구	"
이양현	강동구보건소 파견 ('87.11.27-'88.3.15)	구의수원거사무소	지방기계원 (8등급)
◎ 1987년 11월 28일자		명제 36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명은	동계담당부	전라제갈소	지방행정직 9급상당
◎ 1987년 12월 1일자		명제 365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철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출을 명함	서울시립대학교	지방행정서기
서울특별시청			